



제 546호 2023. 2. 23(목)

조 례

제1898호	김해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일괄 정비 조례	34425
제1899호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	34427
제1900호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4431
제1901호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4434
제1902호	김해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4435
제1903호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4436
제1904호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34438
제1905호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4439
제1906호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4440

고 시

제2023-46호	김해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3-1-8호선) 경미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4441
제2023-4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김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34442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23-50호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4차)수립 및	34446
	실시계획변경(3차)인가 취소 고시	
제2023-51호	한림면 장방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4449
	시행계획 수립 고시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김해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일괄 정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 해 시 장 홍 태 용

2023년 2월 23일

김해시 조례 제1898호

김해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일괄 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3년 김해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을 일괄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기업혁신과장”으로 한다.

제3조(「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개정)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혁신경제국장”으로 한다.

제4조(「김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의 개정) 김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시민안전국장”으로 한다.

제5조(「김해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시민안전국장”으로 한다.

제6조(「김해시 시민안전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김해시 시민안전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시민안전국장”으로 한다.

제7조(「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소장”을 “김해시보건소장”으로 한다.

제8조(「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소장”을 “김해시보건소장 및 김해시서부보건소장”으로 한다.

제9조(「김해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소장”을 “김해시보건소장”으로 한다.

제10조(「김해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시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1조(「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안정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제12조(「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의 개정)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과장, 농업정책과장,”을 “환경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해시보건소 및 김해시서부보건소”로 한다.

제13조(「김해시 환경경영기업 대상 조례」의 개정) 김해시 환경경영기업 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후대기과장”을 “기후대응과장”으로 한다.

제14조(「김해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의 개정) 김해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후대기과”를 “기후대응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2023. 1. 1. 시행)으로 부서 명칭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타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제1조)
- 변경된 부서 명칭 반영 (제2조 ~ 제14조)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 해 시 장 홍 태 용

2023년 2월 23일

김해시 조례 제1899호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해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김해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능정보화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을 통한 주민서비스 개선
3. 주민 의견 반영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조치

제2장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지능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4. 지능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김해시 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분석 및 점검
3. 그 밖에 시장이 정보화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해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김해시의회 의원

- 2.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 3. 정보화와 관련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13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책임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총괄한다.
-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 제14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관련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지능정보 시스템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6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자원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시장은 국가지식정보 및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식정보자원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김해시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 환경이 모자란다고 판단하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정보화 교육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시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기업이나 단체 등에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

제19조(정보문화의 창달) 시장은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정보사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법 제44조제2항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20조(정보격차의 해소 등) 시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2. 법 제50조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제21조(정보 보호 대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능정보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운영 장소의 출입 권한 등 보안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및 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그 지능정보 보호 대책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김해시 누리집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 보호를 위해 전산기기에 사용하는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22조(정보화마을 지원) 시장은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화마을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정보화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3. 정보화마을 체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보화마을의 정보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 등) ①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3.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상담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는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경상남도

3. 경상남도 김해교육지원청

4.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와 관련한 기관이나 단체

제2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김해시 정보화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김해시 정보화 기본계획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김해시 정보화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한 실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김해시 정보화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김해시 정보화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촉된 김해시 정보화위원회 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의원으로 본다.

제4조(정보화책임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9조에 따라 임명된 정보화책임관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본다.

제5조(지역정보화 사업 등의 위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역정보화 사업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능정보화 사업 등을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역정보통합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역정보통합센터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능정보통합센터로 본다.

제7조(정보보호 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정보보호 대책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한 지능정보 보호 대책으로 본다.

◇ 개정이유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도 「김해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 (제1조~제3조)
-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제13조)
-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4조~제18조)
-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 (제19조~제24조)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 해 시 장 흥 태 용

2023년 2월 23일

김해시 조례 제1900호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출산장려금”을 “출산장려”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출산장려금”이란”을 ““출산축하금”이란”으로 한다.

1. “출산장려시책”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산장려를 위하여 추진·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등) 시장은 출산장려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축하금 등 지원

2.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 제도 홍보

3. 그 밖에 출산장려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중전의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부 또는 모”를 “부모”로, “세대여야 하며,”를 “세대를 구성하고”로,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생아의 출생일 전 90일 또는 출생일부터 9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의 부모(부 또는 모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이 경우 부모는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③ 출생일 현재 시에 부모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조산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9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대상자로 할 수 있다. 다만, 타 지역에서 유사한 목적의 출산축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하지 아니한다.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해외(산모 모국)에서 출산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출생일 이전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면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시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제6조(중전의 제4조)제1항 중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50만원, 셋째아 이상은”을 “이상”으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5조)제1항 중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제3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 접수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신청서를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중전의 제6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조(중전의 제6조) 제2항 중 “제3조”를 각각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중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7조)제1항 중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장려금을”을 “출산축하금을”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일자 등을 기재하여”를 “날짜 등을 적어 넣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출산축하금 지원 대장

연 번	신 청 인(보호자)				신 생 아			출산축하금 지원					비 고	
	성 명	생년 월일	성 별	주 소 (전화번호)	출생 순위	성 명	생년 월일	성 별	예금주	금융 기관	계좌 번호	금 액		지급 일

※ 비고 : 환수 사유 및 일자는 비고란에 기재

◇ 개정이유

-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여 출산·양육관련 경제적 지원에 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출산장려시책 추진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을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범위 명확화 및 신청 안내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안내 부족으로 인한 지원금 미신청 및 미지급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변경 (제명)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의 명확화 (제1조)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 지원”
- 정의 (제2조)
“출산장려시책” 정의 신설
- 명칭 변경 (제2조 ~ 제9조)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시장의 책무 및 지원내용 등 신설 (제3조, 제4조)
- 지원대상자의 범위 명확화 (제5조)
- 지원기준 (제6조)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 “둘째아 이상 100만원”
- 출산축하금 신청 안내 의무 (제7조)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 해 시 장 홍 태 용

2023년 2월 23일

김해시 조례 제1901호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무공수훈자”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2. “보국수훈자”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3. “5·18민주유공자”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4·19혁명유공자”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6. 4·19혁명유공자(유족 또는 가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3호 중 “보국수훈자 수당”을 “보국수훈자, 5·18민주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전상군경유공자”를 “전상군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4·19혁명유공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5·18민주유공자 및 4·19혁명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정의 규정 신설 (제2조)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추가 (제3조 및 제4조)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김해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 해 시 장 홍 태 용

2023년 2월 23일

김해시 조례 제1902호

김해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건축비의 80퍼센트 안에서 지원하며 부족분은 마을회 자부담으로 한다”를
“지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4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1. 신축, 재건축은 개소당 1억 5천만원 이내(단, 건축비의 90퍼센트 안에서 지원하되 부족
분은 마을회의 자부담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물가상승 등 현 실정에 맞도록 마을회관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마을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편익을 증대하기 위함.

◇ 주요내용

마을회관 신축 등의 지원기준 변경 (제7조)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 해 시 장 흥 태 용

2023년 2월 23일

김해시 조례 제1903호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김해시 본청 주차장, 김해시청역 복합주차장, 보건소 주차장”을 “김해시장이 지정하는 유료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수하되, 감면대상 차량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를 “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5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및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부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민원인 차량으로서 1시간 이내 주차차량(보건소는 1시간 30분, 도서관은 3시간 이내 주차차량).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목적으로 입차하는 경우에는 1시간 추가한다.
 2. 공용차량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시의원 차량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5. 경남아이 다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
 6. 김해시 주관 행사·회의 참석, 청사 관리를 위한 작업 등 공무 목적으로 내방한 차량. 다만, 공직자 등이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 국(지방)세의 모범 납세자로 표창을 받아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8. 지방세 등 체납에 따른 공매 차량
 9.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이 경우 모자보건수첩, 임신부 자동차 표지 등 임신부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시의 귀책사유 및 민원처리 지연사유 등으로 1시간을 초과한 차량으로서 별지 제1호 서식의 감면차량 확인을 마친 차량
 11.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1천cc 미만),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3. 장애인차량(「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을 말한다)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
 6.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7. 「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장기 기증자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주 차 요 금 (제5조 관련)

구 분		최초 1시간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목적으로 입차하는 경우 1시간 추가)	1시간 초과(보건소는 1시간 30분, 도서관은 3시간 초과) 후 매 30분마다	1일 최대 주차 요금	비 고
민원인 차 량	대 형	무료	1,000원	6,000원	승합 25인승 이상, 화물·특수 2.5톤 이상
	소 형	"	500원	5,000원	승용, 승합 25인승 미만, 화물·특수 2.5톤 미만
직원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차량 : 1,000원(1일) · 미등록차량 : 일반요금 적용 		- 5,000원	

◇ 개정이유

- 김해시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의 부설주차장 여건에 맞는 주차장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함.
- 관련법 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차장 운영시간 지정 대상 변경 (제4조)
 “김해시 본청 주차장, 김해시청역 복합주차장, 보건소 주차장”
 → “김해시장이 지정하는 유료 부설주차장”
- 주차장 무료 이용시간에 도서관 3시간 추가 반영 (제5조)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홍태용

2023년 2월 23일

김해시 조례 제1904호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0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3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시장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을 피해보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주민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함.
-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여 이중으로 보상 받은 것을 방지하고자 함.
- 동일한 경작지에서 반복해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보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을 하도록 함.
- 기타 피해액을 명확히 산출하기 위해 산정방식을 구체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피해액 산정 방식 구체화 (제8조)
- 피해보상 제외대상 변경 (제10조)
-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가능 규정 신설 (제10조의2)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 해 시 장 홍 태 용

2023년 2월 23일

김해시 조례 제1905호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저공해 조치 대상 경유자동차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 개정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조기 폐차 지원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

◇ 주요내용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범위 확대 (제3조제1항)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을 종전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하던 것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른 경유자동차로 변경하여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확대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 해 시 장 홍 태 용

2023년 2월 23일

김해시 조례 제1906호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가입대상)”을“(피보험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에”를 “보험의 피보험자는 시에”로, “(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를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계약으로 정한”으로 한다.

제7조 중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그 가족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을 “보험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기존에 보상범위를 열거식으로 한정된 조문을 보험종류,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보험기관과의 계약에 따르도록 개정하여 보험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 집행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등록된 외국인”을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수정 (제3조)
- 보험종류,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보험기관과의 계약에 따르도록 함 (제4조)
- “예산의 범위에서”를 “계약으로 정한”으로 수정 (제5조)
- 보험금 청구자에 관한 일부 문구 수정 (제7조)

김해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3-1-8호선) 경미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해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3-1-8호선)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055-330-359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 02. 23.

김 해 시 장

1.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경미한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8호선)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3	1-8	25~35	보조 간선 도로	1,163	대로 3-1-6	대로 3-1-2	일반도로	-	99.03.04	-
변경	대로	3	1-8	25~35	보조 간선 도로	1,163	대로 3-1-6	대로 3-1-2	일반도로	-	99.03.04	사면부 포함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1-8	대로 3-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원 및 연장 변경없음• 면적변경 : A=32,899.1㎡ → 33,172.1㎡ (증 2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시설(대로3-1-8호선)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사 시 발생하는 사면부까지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으로 결정(변경) 하고자 함.

2.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경미한 결정(변경) 도면 : 생략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김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김해시 신문동 600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2. 23.

김 해 시 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가. 사업의 명칭 :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600번지 일원 공동주택(주상복합)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변경) : 주식회사 제이엠산업개발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1) 상 호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2) 대표자성명 : 이창재, 김영진

3)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삼정빌딩)

다. 사업시행자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1)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600번지 일원

2) 면 적 : 24,674㎡ (대지면적 : 17,975㎡)

3) 건설주택의 규모(변경)

○ 건축면적 : 7,211.8519㎡

○ 건축연면적 : 209,941.0787㎡

○ 주택평형별 및 규모

구 분	건물규모	세대수	공급면적(㎡)			
			계	전용	주거공용	세대수
공동주택 (민간분양)	지하 6층 ~ 지상 45층 (5개동)	아파트 84세대	110.4502㎡	84.5808㎡	25.8694㎡	334
			110.4504㎡	84.4699㎡	25.9805㎡	420
			145.8688㎡	112.5482㎡	33.3206㎡	85
			145.8691㎡	112.5482㎡	33.3209㎡	1

구 분	건물규모	호수	공급면적(㎡)			
			계	전용	공용	호수
오피스텔 (민간분양)	지하 6층 ~ 지상 44층 (1개동)	오피스텔 246호	156.1666㎡	109.5468㎡	46.6198㎡	164
			169.9088㎡	119.7480㎡	50.1608㎡	81
			169.9089㎡	119.7480㎡	50.1609㎡	1

구 분	건물규모	공급면적(㎡)			비고
		계	전용	공용	
제2종근생	지상 1층	2,216.3301㎡	1,274.4408㎡	856.2907㎡	
판매시설	지하 1층	2,130.7315㎡	1,209.6112㎡	1,006.7189㎡	

○부대건물현황

구 분	구 모		비 고
	층 수	연 면 적 (㎡)	
관리사무소	지하1층,지상1층	182.3509	2개소
어린이집	지상1층	332.5046	
경로당	지하1층	148.2704	
다함께돌봄센터	지하1층	162.9498	
주민공동시설	지하1층,지상1층	1,785.5115	휘트니스센터, 공용홀 및 계단
작은도서관	지상1층	146.4635	
경비실	지상1층	25.6973	
용역원실	지상1층	61.3161	
지하주차장	지하6층~지하1층	64,053.7011	
MDF, 방재실	지하1층,지상1층	280.0801	2개소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2022.08.11 ~ 2026.01.31. → 2022.08.11 ~ 2027.01.31

2.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다.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 불임1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불임1

3. 승인관련서류

관계도서(관련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는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366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불임1>

김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자(변경)

○ 당초

가. 상 호 : 주식회사 제이엠산업개발

나. 대표자성명 : 배 재 민

다.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로27번길 97, 5층(관동동)

○ 변경

가. 상 호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나. 대표자성명 : 이창재, 김영진

다.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01, 13층 (역삼동,삼정빌딩)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60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 김해 도시계획시설 사업

다. 사업의 명칭 : 김해시 신문동 공동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 대1-3-2호선, 중3-99호선, 소2-642호선, 공공공지3-3, 공공공지3-4

시설명	도시계획결정		금회 시행규모			비고
	길이(m)	폭원(m)	길이(m)	폭원(m)	면적(m ²)	
대로 1-3-2	4,726.0	35~45	-	-	746	
중로 3-99	114.9	13.0	114.9	13.0	2,432	
소로 2-642	176.0	8.0	176.0	8.0	1,423	
공공공지3-3	-	-	-	-	1,589	
공공공지3-4	-	-	-	-	509	

4.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 2022. 8. 19. ~ 2024. 8. 18.

○ 변경 : 2022. 8. 19. ~ 2027. 1. 31.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변경)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m ²)	편입면적(m ²)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39필지)				15,220	6,699						
1	신문동	594-2	도	294.0	294.0		미등기				
2	“	595-1	도	63.0	22.0	우리자산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3	“	595-2	주	983.0	170.0	우리자산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4	“	595-4	대	39.0	28.0	우리자산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5	“	595-7	대	2.0	2.0	우리자산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6	“	596-2	대	726.0	12.0	우리자산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7	“	602	대	243.0	10.0	우리자산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8	“	602-1	대	15.0	14.0	우리자산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9	“	604	대	516.0	63.0	우리자산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10	“	612	대	346.0	115.0	우리자산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11		621-1	도	46.0	8.0	우리자산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12		622	도	145.0	94.0	우리자산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13	“	626	묘	978.0	352.0	우리자산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14	“	627	전	562.0	358.0	우리자산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m ²)	편입면적(m ²)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5	“	627-1	전	241.0	241.0	우리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16	“	628	답	537.0	358.0	우리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17	“	629	답	1,369.0	107.0	우리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18		632-2	도	152.0	103.0		미등기				
19	“	961-1	대	212.0	212.0	우리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20	“	961-2	대	9.0	9.0	우리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21	“	961-3	대	319.0	319.0	우리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22	“	962	대	298.0	282.0	우리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23	“	963	대	407.0	224.0	우리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24	“	964-1	대	224.0	224.0	우리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25	“	966	전	1,031.0	978.0	우리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26	“	967	전	684.0	361.0	우리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27	“	968	대	439.0	109.0	우리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28	“	968-1	대	14.0	14.0	우리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29	“	969	대	436.0	185.0	우리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30	“	589-1	도	417.0	56.0	국토교통부					
31	“	594-4	도	6.0	6.0	김해시					
32	“	596-1	도	216.0	209.0	경상남도					변경
33	“	596-9	도	4.0	4.0	경상남도					변경
34	“	596-5	대	7.0	7.0	경상남도					변경
35	“	596-11	대	35.0	29.0	경상남도					변경
36	“	596-6	도	29.0	15.0	경상남도					변경
37	“	623-2	도	276.0	166.0	국토교통부					변경
38	“	950-1	답	190.0	190.0	국토교통부					
39	“	1386	도	2,710.0	749.0	국토교통부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4차)수립 및 실시계획변경(3차)인가 취소 고시

김해시 고시 제2022-311호(2022. 11. 10.)로 개발계획변경(4차)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3차) 인가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하고 「도시개발법」 제9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김해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3일

김 해 시 장

○ 취소사유

-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715호, 2022. 6. 21., 일부개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 누락
- ※ 개발계획변경(4차)수립 및 실시계획변경(3차) 인가에서 변경한 사항인 임대주택건설용지 비율 변경에 대한 취소이며, 김해시고시 제2022-137호(2022.5.13.)로 고시된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3차)수립 및 실시계획변경(2차)인가’까지 유효함.

I. 신문1지구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 불임

II. 관련도면 : 게재 생략

I.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신문1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374번지 일원
- 면 적 : 619,953㎡

3. 도시개발사업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사업대상지의 지리적 여건(김해관광유통단지, 장유신문지구,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율하 신도시 등)을 감안해 볼 때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지역으로
- 급속한 도시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한 새로운 택지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래 수용인구에 대비한 택지의 공급과 계획적·체계적 도시개발이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
- 장래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지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기여하고 도시 기반시설의 조기 확보에 따른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지 증진이 이바지하고자 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374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해당사업의 환지처분 일까지(2021.08.13. ~ 2025.08.12.)
- 시행방식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관한 토지 명세 : 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변경없음)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변경없음)

- 「도시개발법」 제9조에 따라 인가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김해시 도시개발과 (☎ : 055-330-3614)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II. 실시계획(변경)인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의 지정목적(변경없음)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4. 시행자(변경없음)

5. 시행기간(변경없음)

- 시행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해당사업의 환지처분 일까지(2021.08.13. ~ 2025.08.12.)

6. 시행방식(변경없음)

- 사업방식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 변경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없음)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변경사항 취소**)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부분에 한함)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A17-1	34,846	신문동 437-8번지 일원	34,846	-	34,846	변경 (취소)	공동주택용지 (분양)
						환원	공동주택용지 (분양 및 임대)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인가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김해시청(도시개발과)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없음)

Ⅲ. 관련도면 : 게재 생략

한림면 장방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수립 고시

김해시 한림면 장방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82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2. 23.

김 해 시 장

1. 사업명 : 한림면 장방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의 목적 : 장방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사업비 : 2,035백만원 ※자부담 포함
4. 주요사업내용
 - 가.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장방마을 일원
 - 나. 사업범위 : 장방마을 일원
 - 다. 주요사업
 - 생활·위생·안전 인프라개선 : 안전보행길 정비
 - 안전 인프라 구축 : 가로등 설치,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등
 - 공동체 인프라 정비: 다목적 커뮤니티시설 신축(마을회관 신축)
 - 주택 정비 :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 노후 주택수리
 - 생활환경 및 경관개선 : 담장 정비, 안전등 및 외벽환경정비 등
 - 휴먼케어역량강화 :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
5. 사업시행자 : 김해시장
6. 사업예정기간 : 2021년 ~ 2024년
7. 관계도서의 비치
 - 관계도서는 김해시 건설과(☎055-330-3794)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대상 토지 세목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합 계					9,205	354						
1	장방리	763	1	전	1468	220	최*술	김해시 한림면 **리 ****				석축 쌓기
2	장방리	1170		대	423	127	정*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리 *** **** * * ****				전석 쌓기
3	장방리	1169		대	274	7	안*수	김해시 한림면 장방로 ***** *****				전석 쌓기
4	장방리	959	2	대	920	-	박*예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 **, **** *				벽화 도색
5	장방리	962		대	281	-	안*자 외 1인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 ****, ****				담장 정미 및 벽화 도색
6	장방리	962	3	대	69	-	장*애	서울 중랑구 *** ****, **** ****				벽화 도색
7	장방리	1010	1	대	225	-	재단법인 마산*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마산시 완월동 ***				벽화 도색
8	장방리	1010	3	대	117	-	장*화	서울특별시 종로구 ***** *, *****				벽화 도색
9	장방리	1006		대	403	-	김*선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 ***** *****				벽화 도색
10	장방리	1005		대	426	-	김*원	****				벽화 도색

<사용대상 토지 세목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합 계					9,205	354						
11	장방리	1004		대	230	-	이*환	****				담장 정비 및 벽화 도색
12	장방리	1004	1	대	275	-	이*환	****				벽화 도색
13	장방리	1007		대	321	-	배*미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 ***, *****				벽화 도색
14	장방리	1007	1	대	274	-	신*철	부산 수영구 *** *****				벽화 도색
15	장방리	1175	4	대	213	-	장*남	*****				담장 정비 및 벽화 도색
16	장방리	1174		전	152	-	장*남	*****				담장 정비 및 벽화 도색
17	장방리	1021	2	대	919	-	이*규	서울특별시 중랑구 **** *****				벽화 도색
18	장방리	1016		대	516	-	김*일	*****				담장 정비 및 벽화 도색
19	장방리	1020	3	대	929	-	장*영	부산 북구 화명동 2290 *****				벽화 도색
20	장방리	1019	1	답	770	-	최*석	****				담장 정비 및 벽화 도색